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다음기술단(박철) ② 우리기술(주)(박나영)

나. 전화번호 : ① 031-698-2288 ② 044-855-1358

2. 명칭 : ICT기반 sm-PED(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safety & maintenance)를 활용한 시설물 상태평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ICT기반 시설물 상태평가 기술로, 서버에 ①시설물 정보를 저장하고, 현장에서 sm-PED의 ②W-Fi 및 QRcode로 시설물 정보를 다운받아, ③전자망도에 결함·손상을 입력하면, ④알고리즘이 각 결함·손상을 양호·주의·불량 상태로 구분하여 외관조사망도 작성이 완료된다. 외관조사망도 정보는 다시 ⑤알고리즘에 의해 최적 값이 분석되고 종합상태점수가 산정되어 교량 시설물 안전등급이 평가된다. 그 이후 ⑥전체 결함·손상 통계분석 및 ⑦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량 시설물 상태평가가 완료된다

<범위>

서버구축 이후 sm-PED를 활용하여 시설물 정보 저장, 현장에서 시설물 정보 확인, 결함·손상 입력, 결함·손상 상태구분, 상태등급평가,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sm-PED 상태평가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5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개발 및 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감찰팀을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8급 2명, 9급 8명)을 행정직군 정원 8명(9급 8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